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08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김승원 · 강준현 · 민병덕
김종민 · 김용만 · 이주희
서미화 · 이강일 · 이성운
박상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투자에 관한 자문을 업으로 하는 자를 투자자문업자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조언을 업으로 하는 자를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규율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들의 영업행위 규칙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대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을 하는 소위 ‘핀플루언서’들이 등장하고 있음. 이들의 조언에는 부적절한 정보 전달, 이해상충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발언이 일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예측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대가 여부와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자문을 하는 자는 자신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

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80조의7 신설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편 제3장에 제18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0조의7(유사투자자문을 하는 자의 보유자산 공개의무) 투자자문업자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복적으로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46조에 제3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의2. 제180조의7을 위반하여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사투자자문을 하는 자의 보유자산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80

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조언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32. ~ 64. (생략)	<u>자</u> 32. ~ 64. (현행과 같음)
----------------	--------------------------------